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홍성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437

발의연월일: 2021. 11. 19.

발 의 자:홍성국·강선우·김경만

김성주 • 박성준 • 윤영찬

윤재갑 • 이병훈 • 이원욱

정일영 · 천준호 · 최혜영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복잡한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제도를 실시하고 성립된 조정 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음.

그러나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분쟁조정 절차를 종료하고 소송의 결과에 따르도 록 하고 있어, 이 점을 악용한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방해할 목적 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.

이러한 관행은 장기간 송사에 따른 금전적, 시간적, 심리적 부담이 큰 서민과 영세사업자로 하여금 피해구제 포기에 이르게 하는 등 불 공정 관행으로 이어져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음.

이에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수소법원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

함으로써 분쟁당사자를 보호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27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의2제4항제3호 중 "거부하거나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"을 "거부하는"으로 한다.

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조의3(소송과의 관계) ①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.

-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.
- ③ 협의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·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소송·조정절차 중지에 관한 적용례)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7조의2(조정 등) ① ~ ③ (생	제27조의2(조정 등) ① ~ ③ (현
략)	행과 같음)
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	4
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	
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.	
	,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	3
거부하거나 해당 분쟁조정사	<u> 거부하는</u>
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	
<u>기하는</u>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	
실익이 없는 경우	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27조의3(소송과의 관계) ① 조
	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
	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
	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
	수소법원은 조정이 있을 때까
	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.
	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소
	<u>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</u>
	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
	차를 중지하여야 한다.

③ 협의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 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 이 관련되는 동종·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조 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.